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 품 명	이지필 멀티	색상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용도: In-Can 자동조색용 Pastel Base 사용상의 제한 : 용도 외 사용제한	용도분류체계	8. 코팅, 페인트, 신너, 페인트 제거제 8.2 수성 페인트
공급자/유통자정보	에스피삼화(주)		
제조자 정보	에스피삼화(주)	긴급전화번호	(031) 499 - 0394
주 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성곡동)		

2. 유해.위험성

가.유해.위험성 분류

①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 2

②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2

나.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요소



① 그림문자 :

② 신호어 : 경고

③ 유해,위험문구 :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④ 예방조치문구 :

예방-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를) 철저히 씻으시오.

대응-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제품 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에 따른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다.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NFPA 등급 (0~4 단계)

-보건:0, 화재:0, 반응성: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 NO	함유량(%)	비고
Water	물	7732-18-5	40 이상 ~ 50 % 미만	
Titanium dioxide	이산화 티타늄	13463-67-7	20 이상 ~ 30 % 미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 NO	함유량(%)	비고
Polyvinyl acetate polyvinyl pyrrolidone	폴리비닐 뷰티랄(POLYVINYL BUTYRAL)	63148-65-2	10 이상 ~ 20 % 미만	
Limestone	석회암 ; 석회석	1317-65-3	10 이상 ~ 20 % 미만	
Hexanoic acid,2-ethyl-, 1,1'-[1,2-ethanediylbis(oxy-2,1-ethanediyl)] ester		94-28-0	1 이상 ~ 10 % 미만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①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이상 씻어내시오.
② 콘텍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
③ 증상(발적, 자극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처치를 받으시오.
④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①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②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③ 오염된 피복을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
④ 환자와 직접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피복의 접촉을 피하시오.
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⑥ 용융물질이 피부에 고착되어 제거해야할 시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시오.
⑦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신체에 접촉한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①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②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
③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하지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④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오.
⑤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시오.
⑥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①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②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③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④ 의식이 없는 경우 억지로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엉덩이 아래로 숙여 폐 흡입을 방지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①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② 노출 상황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③ 폭로 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④ 접촉 및 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4. 응급조치 요령

⑥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비수용성 제품 폭발 및 화재 시 주수소화 금지

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연소 및 가열시 탄소산화물 발생

라.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1) 착용할 보호구 :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2) 예방조치

① 화재발생 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옥외장소로 인원을 대피시키시오.
② 인근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하고 정확한 화재 위치를 통보하시오.
③ 화재로 인한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 시, 최대한 흡입을 피하시오.
④ 화재진압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⑤ 관계인 외 화재구역 주변 인원을 통제하시오.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①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②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시오.
③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④ 작업공간에 출입할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⑥ 화재가 없는 누출 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⑦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⑧ 밀폐된 공건에 출입하기 전 환기를 실시하고, 농도를 측정하시오.
⑨ 물분무로 증기를 줄이되 누출물이나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① 위험하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누출 확산을 차단하시오.
② 누출량이 많을 경우 인근 소방서,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신고하시오.
③ 대기 및 악취 :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있으시오.
④ 수질 :
누출물질이 하수구, 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시오.
흡수제를 사용하여 누출물질 처리 후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⑤ 토양 :
모래주머니, 비가연성 물질 등을 사용하여 방벽을 쌓으시오.
흡수제를 사용하여 누출물질 처리 후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① 소량 누출 :
모래, 비가연성 물질 등으로 흡수시킨 후 적당한 용기에 담아 처리하시오.
② 다량 누출 :
방벽, 재방을 축조하여 누출 확산을 차단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① 필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오.
② 혼재 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③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증기 및 분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④ 열 발생 및 스파크를 주의하시오.
⑤ 큰 충격과 마찰을 피하시오.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①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② 적정한 온도, 습도, 압력을 유지하여 보관하시오.
③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하시오.
④ 수납하여 보관한다면 용기는 당해 물질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부식, 균일 등이 없는 것으로 하시오.
⑤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하시오.
⑥ 화원, 열 발생, 스파크 등을 피하시오.
⑦ 큰 충격과 압력을 주의하시오.
⑧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규정을 준수하시오.

피해야 할 조건 : 혼합 및 혼적 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십시오.
인화성 제품은 열,스파크,고열로 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노출기준

구성성분	CAS NO	국내노출기준	ACGHI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Water	7732-18-5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Titanium dioxide	13463-67-7	TWA : 10 mg/㎥	TWA 10 mg/m3	자료없음
Polyvinyl acetate polyvinyl pyrrolidone	63148-65-2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imestone	1317-65-3	TWA : 10 mg/㎥	자료없음	자료없음
Hexanoic acid,2-ethyl-, 1,1'-[1,2-ethane diylbis(oxy-2,1-ethanediyl)] ester	94-28-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사업주는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화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장함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①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을 착용할 것.
②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을 착용할 것.
③ 방독마스크는 직결식, 유기화합물용을 착용할 것
④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⑤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⑥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눈 보호 :
①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를 설치하시오.
②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③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손 보호 :
① 지속적, 장기적 노출 시 피부 장애가 예상되므로 고무 및 PVC 재질의 불투과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②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③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신체 보호 :
① 유출이나 엎지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 불투과성 고무 및 PVC 재질의 보호앞치마를 착용하여 작업하고,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복을 착용할 것.
②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③ 방진복 또는 오염을 예방 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④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유색 불투명 액체	카. 증기압 : 자료없음
나. 냄새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수용성
다. 냄새역치 :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하. 비중 : 1.36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없음
사. 인화점 (℃): 해당없음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103 KU
자. 인화성(고체,기체)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충격,진동 등): 충격에 의한 파손에 주의할 것,
열, 스파크, 불꽃 등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마찰 및 오염을 피하시오.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탄소화물 (열분해생성물)

라. 피해야할 물질: 해당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화학물질명	LD50.경구	LD50.경피	LD50.흡입(가스)	LD50.흡입(증기)	LD50.흡입(분진)
Water	LD50 90000 mg/kg Rat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Titanium dioxide	LD50 >2000 mg/kg Rat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C50 > 6.82 mg/ℓ 4 hr Rat
Polyvinyl acetate polyvinyl pyrrolidon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imeston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Hexanoic acid,2-ethyl-, 1,1'-[1,2-ethane diylbis(oxy-2,1-ethanediyl)] ester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Titanium dioxid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혹은 비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사람에서 패치 테스트 결과 음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마우스 소핵시험 음성, 마우스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생식발달독성시험결과, 임상증상, 몸무게변화 등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NOAEL= 1000 mg/kg bw/day(OECD TG 2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흉은 기도를 자극함.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직업상 2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서 진폐증이 보고됨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Polyvinyl acetate polyvinyl pyrrolidon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에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래빗/눈(100 mg/24H): 중간 자극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흡입시 기도 자극을 일으킴

Limeston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 발암성영향

화학물질명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시	NTP	EU CLP	OSHA	IARC	ACGIH
Titanium dioxide	자료없음	2	자료없음	2		2B	A4
Limeston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 독성

화학물질명	어류	갑각류	조류
Water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Titanium dioxide	LC50 > 100 mg/ℓ 96 hr Carassius auratus(OECD Guidel	LC50 > 500 mg/ℓ 48 hr Daphnia magna	EC50 > 50 mg/ℓ 7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Polyvinyl acetate polyvinyl pyrrolidon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imeston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Hexanoic acid,2-ethyl-, 1,1'-[1,2-ethanediylbis(oxy-2,1 -ethanediyl)] ester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가. 수생.육생 생태 독성: 하천, 토양으로 유출시 자연 생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다.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① 환경에 유입되지 않게하며 하수구, 하천, 토양 등에 버리지 말 것.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
③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 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④ 유기용제 등 활용 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할 것.

나. 폐기 시 주의사항

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것.
② 무단 매립, 소각하지 말 것.
③ 폐기물 특성에 따라 분류 및 처리할 것.
④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⑤ 폐기물 배출 및 처리는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본 물질에 대한 귀사의 취급, 사용, 관리사항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① 유엔번호 : 해당없음

② 품 명 : 이지필 멀티

③ 정 표 찰 : 해당없음

④ 용기등급 : 해당없음

나. 운송시 주의사항 : 충격에 주의하고 상온에서 운송할 것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① 유엔번호 : 해당없음

② 유엔적정 선적명 : 해당없음

③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

④ 용기등급 : 해당없음

라. 해양오염물질: 비대상

마.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시비상조치: 해당없음

● 유출시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Titanium dioxid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Limest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이지필 멀티 : 해당없음

<유독물질>

해당없음

<제한물질>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위험물 수용성 비위험물 수용성 지정수량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해당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ECHA(유럽화학물질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KOSHA : http://msds.kosha.or.kr/MSDSInfo/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 ECHA : https://echa.europa.eu/home

Titanium Dioxide(TiO2)는 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논문에 100nm 미만의 초미세 TiO2를 사용한 만성동물 흡입 연구결과 암이 증가하였으나 100nm 이상의 경우 발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음.
국내 도료에 사용되는 TiO2는 약 300nm 정도 이므로 암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나. 최초 작성일자 : 우측상단 제정일자 참고

다.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우측상단 개정횟수 및 개정일자 참고

라. 기타